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7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정진욱·주철현·정준호

양부남 · 김문수 · 오세희

이상식 • 민형배 • 조인철

전현희 • 박균택 • 김 윤

복기왕 · 전진숙 · 서삼석

염태영 • 박수현 • 안도걸

박희승 • 이광희 • 황명선

김승원 · 이성윤 · 허성무

장종태 의원(25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임. 저출생에 이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통계청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23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3.1%인 1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21곳 가운데 52곳(22.8%)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을 만큼지방소멸위기 극복은 눈앞에 닥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특히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함께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사회적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림.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통해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2023 년 7월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회발전투구'의 지정·운영 근거 외에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특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의 지방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움.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 제공을 강화하여 지방균형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 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 다.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및 촉진, 기회발전특구의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을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및 제10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에 대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조세특례·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지방 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부여하고, 관할 시·도지사가 지역기반산업을 추진하려는 자에 대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사. 기회발전특구의 교육·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 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2. "지방"이란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 3. "지방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 전하는 것
 - 나.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4. "지방기업"이란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 5. "지방근로자"란 지방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지방기업 이 소재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6.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를 말한다.
- 7.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 8. "임시허가"란 제12조제4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으로서 기회발전특구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이하 "지역기반산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인·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방투자 지원체계

- 제5조(지방투자위원회) ① 지방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에지방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지방투자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 지방투자와 관련한 재원 조달 및 그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3. 대규모 지방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에 따른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 5. 지방투자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행정안 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 및 그 밖에 대통

- 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2. 위촉직 위원: 지방투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 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도 지방투자위원회) 지방에 소재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유치와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계획적인 개발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방투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 제7조(지방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수도권 중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별로 인구과밀·산 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

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 증설하는 경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및 고용보 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 ① 국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라 지방기업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소득세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제9조(지방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연계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양성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 업·근로자·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 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

- 업(이하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주도형 투자일 자리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 2. 참여 경제주체 간의 합의 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 3. 해당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의 지방주도형 투자일 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에는 「지방자치

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이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지원효과 및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
- 2. 제2항 각 호의 사항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주도형 투자일 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및 선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투자 촉

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 제1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 ① 지방에 소재하는 시·도지사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또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

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 개발특구
-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 7.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외 충분한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 2.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 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4.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 5.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 6.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 2.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 4.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 5.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계획
-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의 특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지정변경 및 지정 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를 위한 절차·방법과 지정해제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 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및 조세특례) ①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조성하려는 자는 출자금총액,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기회 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수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 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를 이연·감경할 수 있다.
- 제15조(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 및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

- 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 개발 인프라
- 2.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시를 지원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회발전특구의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기회발전특구특례) ① 시·도지사는 관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 등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노동,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법령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하는 특례(이하"기회발전특구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 기회발전특구특례 부여의 필요성과 적정성
- 2. 기회발전특구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 경제적 효과
- 3. 기회발전특구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 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 4.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기회발전특구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특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유효기간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 5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특례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기회발전특구특례의 관리·감독 및 취소·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부여된 기회발전특구특례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며,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회발전특구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

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신청 또는 운영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관할시·도지사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한 기회발전특구특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를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회발전특구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 2. 제1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4. 지방투자의 유치·촉진 지원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4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적용을 받는 지방기업 또는 지방근로자 등에게이를 통보하고, 취소 또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특례의적용을 즉시 중단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특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기회발전특구에서 지역기반산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산업과 관련된인·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

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 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회신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에 대하여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지역기반산업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1. 인·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인·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 ②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 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 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 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 및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실증특례의 사실과 유효기간, 관련된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

다.

- ④ 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 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기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결과를 공개할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실증사업자는 해당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투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별도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실증특례의 취소) ①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실증특

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실증특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2. 제20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는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 와 관련된 해당 사업과 지역기반산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2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기회발전특구에서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지역기반산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지역기반산업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인·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②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 를 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기반산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 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회발 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별도로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 2.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제24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26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①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8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의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 6.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제6장 보칙

- 제29조(의견진술과 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를 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8항에 따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을 취소하려는 경우
 - 2.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
 - 3.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